

퇴직연금제도와 원천징수

 근로복지공단



□ 원천징수의무자와 퇴직급여

○ 원천징수의무자

	원천징수의무자	퇴 직 급 여
퇴직금 제도	회사	30일분의 평균임금 × 근속연수
DB제도	회사	위와 동일
DC제도	퇴직연금사업자	사용자부담금 + 운용수익
	회사	직접 지급액
	*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 각각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나중에 지급하는 자는 먼저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세액정산(합산신고)을 해야 함.	

※ 평균임금 :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동 기간의 총일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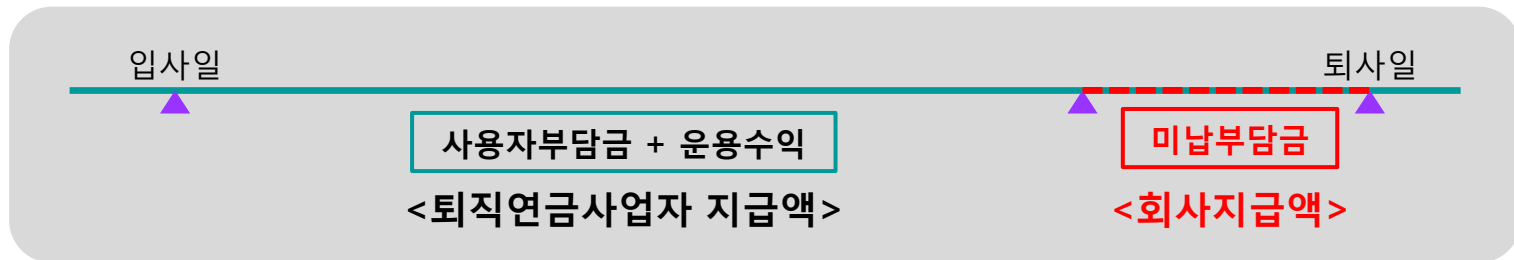
□ 원천징수의무자와 퇴직급여

○ DC제도의 회사 직접 지급액의 예시

➤ DC제도 가입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



➤ 미납한 사용자부담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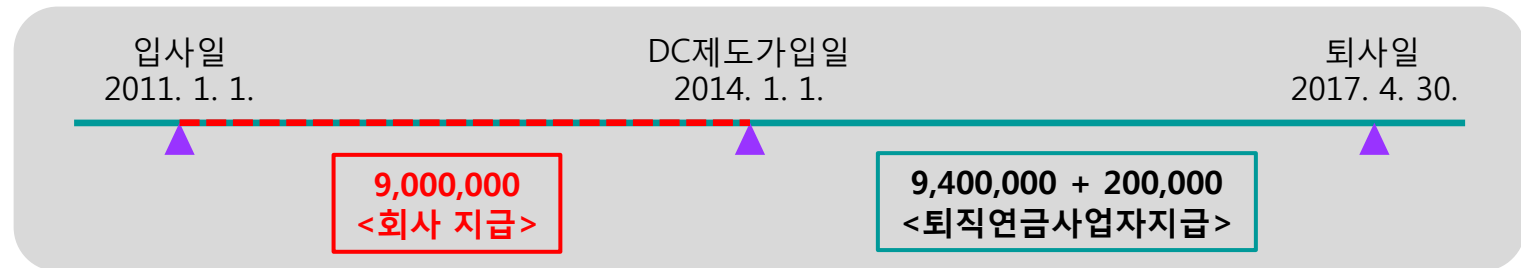


➤ 해고예고수당 등

□ 확정기여형(DC)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

○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(선 지급)

<사례 1> DC제도 가입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



퇴직 급여 현황	근 무 처 구 분		중간지급 등				최종		정산		
	⑬ 근무처명										
	⑭ 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	
	⑮ 퇴직급여						9,000,000		9,000,000		
	⑯ 비과세 퇴직급여										
	⑰ 과세대상 퇴직급여(⑮-⑯)						9,000,000		9,000,000		
근속 연수	구 분	⑱ 입사일	⑲ 기산일	⑳ 퇴사일	㉑ 지급일	㉒ 근속월수	㉓ 제외월수	㉔ 가산월수	㉕ 중복월수	㉖ 근속연수	
	중간지급 근속연수										
	최종 근속연수	2011-01-01	2011-01-01	2017-04-30	2017-05-06	76	0	0		7	
	정산 근속연수										
	안분	2012.12.31.이전									
		2013.1.1.이후	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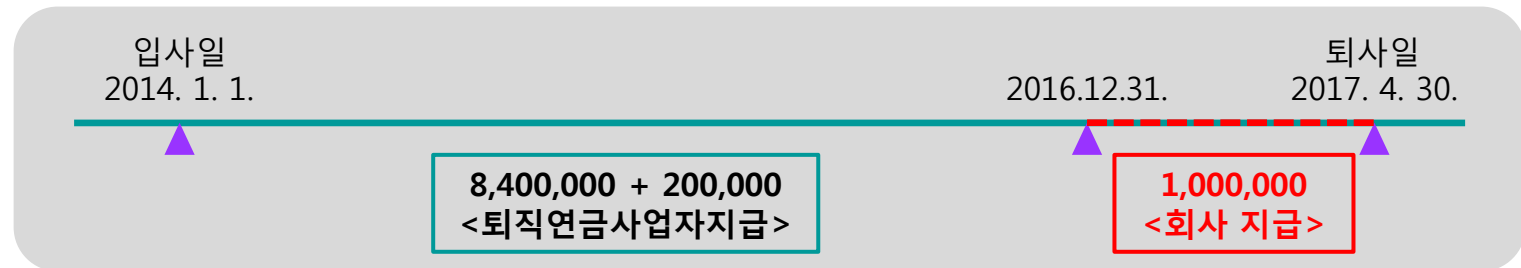
주의 : 2013.12.31.(×)

산출세액 : 121,999

□ 확정기여형(DC)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

○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(선 지급)

<사례 2> 미납한 사용자부담금(연납 사업장)



퇴직 급여 현황	근 무 처 구 분		중간지급 등		최종		정산	
	⑬ 근무처명	⑭ 사업자등록번호	⑮ 퇴직급여	⑯ 비과세 퇴직급여	⑰ 과세대상 퇴직급여(⑮-⑯)	1,000,000	1,000,000	
근속 연수	구 분	⑱ 입사일	⑲ 기산일	⑳ 퇴사일	㉑ 지급일	㉒ 근속월수	㉓ 제외월수	㉔ 가산월수
	중간지급 근속연수							
	최종 근속연수	2014-01-01	2014-01-01	2017-04-30	2017-05-06	40	0	0
	정산 근속연수							
	안분	2012. 12. 31. 이전						
		2013. 1. 1. 이후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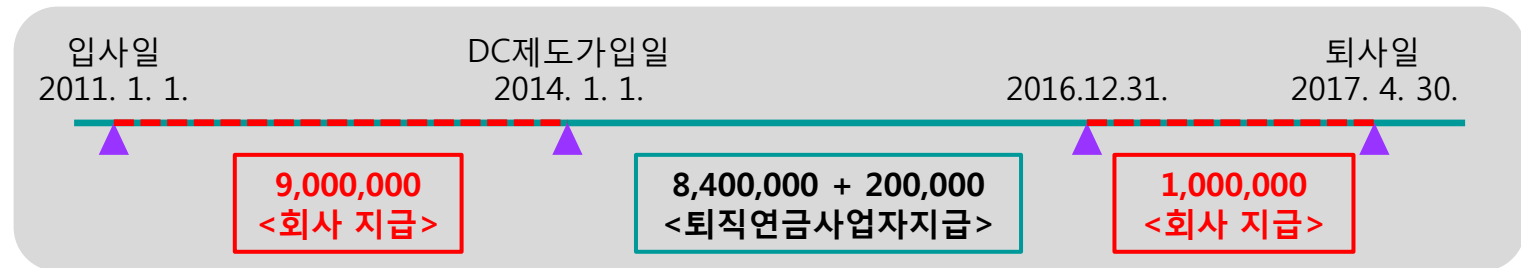
주의 : 2017. 1. 1.(×)

산출세액 : 0

□ 확정기여형(DC)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

○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(선 지급)

<사례 3> DC가입 전 퇴직금과 미납한 사용자부담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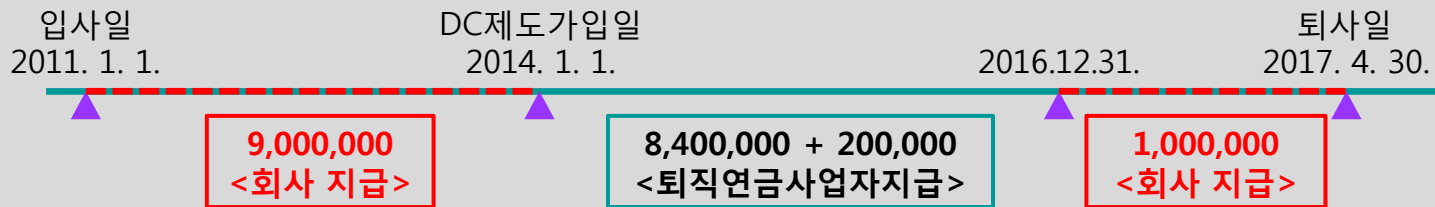
퇴직 급여 현황	근 무 처 구 분		중간지급 등		최종		정산			
	⑬ 근무처명	⑭ 사업자등록번호	⑮ 퇴직급여	⑯ 비과세 퇴직급여	⑰ 과세대상 퇴직급여(⑮-⑯)	10,000,000	10,000,000			
근속 연수	구 분	⑱ 입사일	⑲ 기산일	⑳ 퇴사일	㉑ 지급일	㉒ 근속월수	㉓ 제외월수	㉔ 가산월수	㉕ 중복월수	㉖ 근속연수
	중간지급 근속연수									
	최종 근속연수	2011-01-01	2011-01-01	2017-04-30	2017-05-06	76	0	0		7
	정산 근속연수									
	안분	2012.12.31.이전								
		2013.1.1.이후								

산출세액 : 153,199

□ 확정기여형(DC)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

○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(세액정산)

➤ 동일한 연도에 지급받은 퇴직금은 반드시 합산과세



	근 무 처 구 분		중간지급 등		최종		정산			
퇴직 급여 현황	⑬ 근무처명									
	⑭ 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
	⑮ 퇴직급여		10,000,000		8,600,000		18,600,000			
	⑯ 비과세 퇴직급여									
	⑰ 과세대상 퇴직급여(⑮-⑯)		10,000,000		8,600,000		18,600,000			
근속 연수	구 분	⑱ 입사일	⑲ 기산일	⑳ 퇴사일	㉑ 지급일	㉒ 근속월수	㉓ 제외월수	㉔ 가산월수	㉕ 중복월수	㉖ 근속연수
	중간지급 근속연수	2011-01-01	2011-01-01	2017-04-30	2017-05-06	76	0	0		7
	최종 근속연수	2011-01-01	2011-01-01	2017-04-30	2017-05-07	76	0	0		7
	정산 근속연수									
	안분	2012. 12. 31. 이전								
		2013. 1. 1. 이후								
퇴직소득 세액계산	④④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					2017				
	④⑤ 퇴직소득세 산출세액					421,517				
	④③ 퇴직소득세 산출세액(④⑤-④⑥)									
	④⑥ 기납부(또는 기과세이연) 세액					153,190				
	④⑦ 신고대상세액(④⑤-④⑥)					268,327				

□ 확정기여형(DC)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

○ 퇴직연금사업자의 세액정산(요약)

	<사례 1>	<사례 2>	<사례 3>
중간지급 등	9,000,000	1,000,000	10,000,000
최 종	9,600,000	8,600,000	8,600,000
정 산	18,600,000	9,600,000	18,600,000
산출세액	421,517	219,200	421,517
기납부 세액 (기과세이연)	121,990	0	153,190
신고대상세액	299,527	219,200	268,327

※ 퇴직연금사업자는 [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]이 아니라 [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]서식을 사용합니다.

□ 확정기여형(DC)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

○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(후 지급)

<사례 1> DC제도 가입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



근 무 처 구 분		중간지급 등				최종		정산	
퇴직 급여 현황	⑬ 근무처명								
	⑭ 사업자등록번호								
	⑮ 퇴직급여	9,600,000				9,000,000		18,600,000	
	⑯ 비과세 퇴직급여								
	⑰ 과세대상 퇴직급여 (⑮-⑯)	9,600,000				9,000,000		18,600,000	
근속 연수	구 분	⑱ 입사일	⑲ 기산일	⑳ 퇴사일	㉑ 지급일	㉒ 근속월수	㉓ 제외월수	㉔ 가산월수	㉕ 중복월수
	중간지급 근속연수	2011-01-01	2011-01-01	2017-04-30	2017-05-04	76	0	0	7
	최종 근속연수	2011-01-01	2011-01-01	2017-04-30	2017-05-06	76	0	0	7
	정산 근속연수								
	안분	2012. 12. 31. 이전							
		2013. 1. 1. 이후							
퇴직소득 세액계산		④④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				2017			
		④⑤ 퇴직소득세 산출세액							
		③③×퇴직연도별 비율+④③×(⑩×퇴직연도별 비율)							
		④⑥ 기납부(또는 기과세이연) 세액							
		④⑦ 신고대상세액(④⑤-④⑥)							

□ 확정기여형(DC)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

○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(후 지급)

<사례 2> 미납한 사용자부담금(연납 사업장)

입사일 2014. 1. 1. 2016.12.31. 퇴사일 2017. 4. 30.										
			8,400,000 + 200,000 <퇴직연금사업자지급>				1,000,000 <회사 지급>			
퇴직 급여 현황	근 무 처 구 분		중간지급 등			최종			정산	
	⑬ 근무처명									
	⑭ 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
	⑮ 퇴직급여		8,600,000			1,000,000			9,600,000	
	⑯ 비과세 퇴직급여									
근속 연수	⑰ 과세대상 퇴직급여(⑮-⑯)		8,600,000			1,000,000			9,600,000	
	구 분	⑱ 입사일	⑲ 기산일	⑳ 퇴사일	㉑ 지급일	㉒ 근속월수	㉓ 제외월수	㉔ 가산월수	㉕ 중복월수	㉖ 근속연수
	중간지급 근속연수	2014-01-01	2014-01-01	2017-04-30	2017-05-04	76	0	0		7
	최종 근속연수	2014-01-01	2014-01-01	2017-04-30	2017-05-06	76	0	0		7
	정산 근속연수									
	안분	2012. 12. 31. 이전								
퇴직소득 세액계산			④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			2017				
			④ 퇴직소득세 산출세액							
			(33) 퇴직소득세액(33) 퇴직소득세액							
			④ 기납부(또는 기과세이연) 세액							
			④ 신고대상세액(④-④)							

□ 확정기여형(DC)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

○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(후 지급)

<사례 3> DC가입 전 퇴직금과 미납한 사용자부담금

입사일

2011. 1. 1.

DC제도가입일

2014. 1. 1.

2016.12.31.

퇴사일

2017. 4. 30.

9,000,000

<회사 지급>

8,400,000 + 200,000

<퇴직연금사업자지급>

1,000,000

<회사 지급>

퇴직 급여 현황	근 무 처 구 분		중간지급 등		최종		정산			
	⑬ 근무처명									
	⑭ 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
	⑮ 퇴직급여		8,600,000		10,000,000		18,600,000			
	⑯ 비과세 퇴직급여									
⑰ 과세대상 퇴직급여 (⑮-⑯)		8,600,000		10,000,000		18,600,000				
근속 연수	구 분	⑱ 입사일	⑲ 기산일	⑳ 퇴사일	㉑ 지급일	㉒ 근속월수	㉓ 제외월수	㉔ 가산월수	㉕ 중복월수	㉖ 근속연수
	중간지급 근속연수	2011-01-01	2011-01-01	2017-04-30	2017-05-04	76	0	0		7
	최종 근속연수	2011-01-01	2011-01-01	2017-04-30	2017-05-06	76	0	0		7
	정산 근속연수									
	안분	2012.12.31. 이전								
		2013.1.1. 이후								
퇴직소득 세액계산	④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					2017				
	④ 퇴직소득세 산출세액									
	③ 퇴직소득세액 (④ × 10%)									
	⑥ 기납부(또는 기과세이연) 세액					109,510				
	⑦ 신고대상세액 (⑤-⑥)					312,007				

□ 확정기여형(DC)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

○ 회사의 세액정산(요약)

	<사례 1>	<사례 2>	<사례 3>
중간지급 등	9,600,000	8,600,000	8,600,000
최 종	9,000,000	1,000,000	10,000,000
정 산	18,600,000	9,600,000	18,600,000
산출세액	421,517	219,200	421,517
기납부 세액 (기과세이연)	140,710	188,000	109,510
신고대상세액	280,807	31,200	312,007

□ 확정기여형(DC)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

○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

1.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**연금계좌[A21]**행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재하며, **그 외[A22]**행은 퇴직연금사업자외의 자(사업장 등)가 기재한다.
2. **[⑤총 지급액]**과 **[⑥소득세 등]**은 **실제 지급하는 금액**과 **실제 원천징수하는 금액**을 기재한다. 즉, 원천징수영수증상의 [정산]퇴직급여가 아닌 [최종]퇴직급여를 기재한다.

<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/지급명세서>

퇴직 급여 현황	근 무 처 구 분	중간지급 등	최종	정산
	⑬ 근무처명			
	⑭ 사업자등록번호			
	⑮ 퇴직급여	8,600,000	10,000,000	18,600,000
	⑯ 비과세 퇴직급여			
	⑰ 과세대상 퇴직급여(⑮-⑯)	8,600,000	10,000,000	18,600,000

<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>

소득자 소득구분		코드	원 천 징 수 명 세					⑨ 당월 조정 환 급세액	납부세액	
			소 득 지 급 (과세미달, 일부비과세포함)		징수세액				⑩ 소득세 등 (가산세포함)	⑪ 농어촌 특별세
			④ 인원	⑤ 총지급액	⑥소득세등	⑦ 농어촌 특별세	⑧ 가산세			
퇴직소득	연금계좌	A21								
	그 외	A22	1	10,000,000	312,000				312,000	
	가감계	A20	1	10,000,000	312,000				312,000	

□ 확정급여형(DB)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

○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(전부 과세이연)

(사례 1) 퇴직금 19,000,000(2011.1.1.~2017.4.30.) DB적립비율 100%

퇴직 급여 현황	근 무 처 구 분		중간지급 등			최종			정산	
	⑬ 근무처명									
	⑭ 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
	⑮ 퇴직급여					19,000,000			19,000,000	
	⑯ 비과세 퇴직급여									
	⑰ 과세대상 퇴직급여(⑮-⑯)					19,000,000			19,000,000	
근속 연수	구 분	⑱ 입사일	⑲ 기산일	⑳ 퇴사일	㉑ 지급일	㉒ 근속월수	㉓ 제외월수	㉔ 가산월수	㉕ 중복월수	㉖ 근속연수
	중간지급 근속연수									
	최종 근속연수	2011-01-01	2011-01-01	2017-04-30	2017-05-06	76	0	0		7
	정산 근속연수									
퇴직소득 세액계산		④④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				2017				
		④⑤ 퇴직소득세 산출세액				433,996				
		④③×퇴직연도별 비율+④④×(100%-퇴직연도별 비율)								
		④⑥ 기납부(또는 기과세이연) 세액								
		④⑦ 신고대상세액(④⑤-④⑥)				433,996				
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	④⑧ 신고대상세액(④⑦)	연금계좌 입금명세					⑤① 퇴직급여(①⑰)	(51) 이연 퇴직소득세 (④⑧×④⑨/⑤①)		
		연금계좌취급자	사업자등록번호	계좌번호	입금일	④⑨ 계좌입금금액				
		××은행				19,000,000				
		433,996								
		합 계							19,000,000	

□ 확정급여형(DB)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

○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(전부 과세이연)

(사례 2) 퇴직금 19,000,000(2011.1.1.~2017.4.30.) DB적립비율 80%

퇴직 급여 현황	근 무 처 구 분		중간지급 등				최종			정산	
	⑬	근무처명									
	⑭	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
	⑮	퇴직급여					19,000,000			19,000,000	
	⑯	비과세 퇴직급여									
	⑰	과세대상 퇴직급여(⑮-⑯)					19,000,000			19,000,000	
근속 연수	구 분		⑱	⑲	⑳	㉑	㉒	㉓	㉔	㉕	㉖
	중간지급 근속연수		입사일	기산일	퇴사일	지급일	근속월수	제외월수	가산월수	중복월수	근속연수
	최종 근속연수		2011-01-01	2011-01-01	2017-04-30	2017-05-06	76	0	0		7
	정산 근속연수										
퇴직소득 세액계산		④④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					2017				
		④⑤ 퇴직소득세 산출세액									
		④③×퇴직연도별 비율+④④×(100-퇴직연도별 비율)									
		④⑥ 기납부(또는 기과세이연) 세액									
		④⑦ 신고대상세액(④⑤-④⑥)									
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	④⑧ 신고대상세액(④⑦)		연금계좌 입금명세					⑤① 퇴직급여(①⑰)		(⑤①) 이연 퇴직소득세 (④⑧×④⑨/⑤①)	
			연금계좌취급자	사업자등록번호	계좌번호	입금일	④⑨ 계좌입금금액				
	433,996		××은행				15,200,000	19,000,000		433,996	
			××은행				3,800,000				
			합 계				19,000,000				

□ 확정급여형(DB)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

○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(일부 과세이연)

(사례 3) 퇴직금 19,000,000(2011.1.1.~2017.4.30.) DB적립비율 80%

퇴직 급여 현황	근 무 처 구 분		중간지급 등				최종			정산	
	⑬ 근무처명										
	⑭ 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	
	⑮ 퇴직급여						19,000,000			19,000,000	
	⑯ 비과세 퇴직급여										
	⑰ 과세대상 퇴직급여(⑮-⑯)						19,000,000			19,000,000	
근속 연수	구 분	⑱ 입사일	⑲ 기산일	⑳ 퇴사일	㉑ 지급일	㉒ 근속월수	㉓ 제외월수	㉔ 가산월수	㉕ 중복월수	㉖ 근속연수	
	중간지급 근속연수										
	최종 근속연수	2011-01-01	2011-01-01	2017-04-30	2017-05-06	76	0	0		7	
	정산 근속연수										
퇴직소득 세액계산		④④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					2017				
		④⑤ 퇴직소득세 산출세액									
		③③×퇴직연급÷④③+④③×(①①-③③)÷④③					433,996.				
		④⑥ 기납부(또는 기과세이연) 세액									
		④⑦ 신고대상세액(④⑤-④⑥)					433,996				
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	④⑧ 신고대상세액(④⑦)	연금계좌 입금명세					⑤① 퇴직급여(①⑦)	(51) 이연 퇴직소득세 (④⑧×④⑨/⑤①)			
		연금계좌취급자	사업자등록번호	계좌번호	입금일	④⑨ 계좌입금금액					
	433,996	××은행				15,200,000	19,000,000	347,196			
		합 계				15,200,000					

□ 퇴직(연)금의 과세이연

○ 당연 과세이연(퇴직연금제도)

- 원칙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§17 ④)
 - 퇴직연금(DB형, DC형)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은 IRP계좌로 이전하여야 한다.
- 예외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§9)
 -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
 -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

○ 임의 과세이연(퇴직금제도)

- 사업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IRP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.

□ 퇴직(연)금의 과세이연

○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(서식) 작성방법

<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/지급명세서>

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	④⑧ 신고대상세액(④⑦)	연금계좌 입금명세					⑤⑩ 퇴직급여(①⑦)	(51) 이연 퇴직소득세 (④⑧×④⑨/⑤⑩)
		연금계좌취급자	사업자등록번호	계좌번호	입금일	④⑨ 계좌입금금액		
		합 계						

* 작성시기

위 부분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, 과세이연하기 위해 IRP계좌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.

* 작성방법

- [④⑧ 신고대상세액(④⑦)] : 회사가 직접 지급할 퇴직급여인 [최종]의 퇴직급여에 대응하는 세액인 ④⑦신고대상세액을 기재한다.(주의 : ④⑤ 퇴직소득산출세액이 아님)
- [연금계좌 입금명세]의 연금계좌취급자와 사업자등록번호는 IRP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(주의 : DC, DB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님)
- [연금계좌 입금명세]의 계좌번호는 IRP계좌번호이며, 입금일은 IRP계좌에 입금한 날을 기재한다.
- [⑤⑩ 퇴직급여(①⑦)] : [중간지급 등] [최종] [정산] 중 [최종]퇴직급여를 기재한다.

□ 퇴직(연)금의 과세이연

○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(서식) 작성예시

<사례> DC제도에서 회사가 세액정산하는 경우(회사가 나중에 지급)

퇴직 급여 현황	근 무 처 구 분		중간지급 등			최종			정산		
	⑬ 근무처명										
	⑭ 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	
	⑮ 퇴직급여		8,600,000			10,000,000			18,600,000		
	⑯ 비과세 퇴직급여										
	⑰ 과세대상 퇴직급여(⑮-⑯)		8,600,000			10,000,000			18,600,000		
근속 연수	구 분		⑱ 입사일	⑲ 기산일	⑳ 퇴사일	㉑ 지급일	㉒ 근속월수	㉓ 제외월수	㉔ 가산월수	㉕ 중복월수	㉖ 근속연수
	중간지급 근속연수		2011-01-01	2011-01-01	2017-04-30	2017-05-04	76	0	0		7
	최종 근속연수		2011-01-01	2011-01-01	2017-04-30	2017-05-06	76	0	0		7
	정산 근속연수										
	안분	2012.12.31.이전									
		2013.1.1.이후									
퇴직소득 세액계산			④④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				2017				
			④⑤ 퇴직소득세 산출세액								
			(③③×퇴직연도별 비율)+(③×(10-퇴직연도별 비율))								
			④⑥ 기납부(또는 기과세이연) 세액								
			④⑦ 신고대상세액(④⑤-④⑥)								
							421,517				
							109,510				
							312,007				
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	④⑧ 신고대상세액(④⑦)		연금계좌 입금명세					⑤⑩ 퇴직급여(①⑦)		(51) 이연 퇴직소득세 (④⑧×④⑨/⑤⑩)	
			연금계좌취급자	사업자등록번호	계좌번호	입금일	④⑨ 계좌입금금액				
			××은행					5/6	10,000,000		
			합 계						10,000,000		
312,007							10,000,000	10,000,000	312,007		

□ 퇴직(연)금의 과세이연

○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(서식) 작성예시

<잘못 작성된 사례> DC제도의 회사 지급액이 있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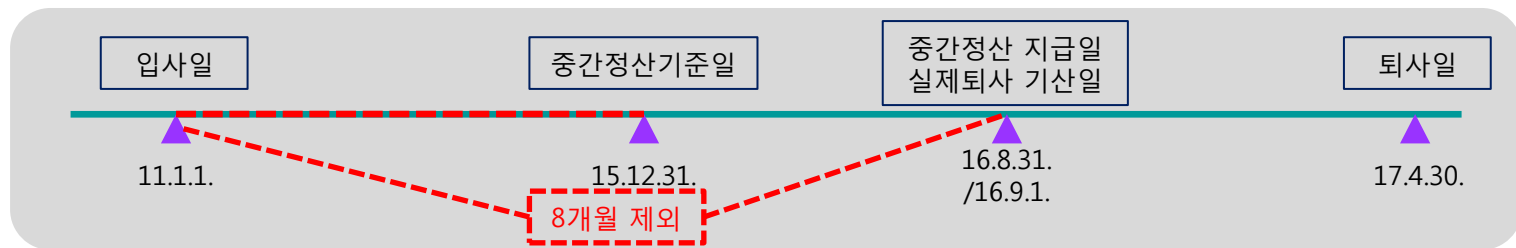
퇴직 급여 현황	근 무 처 구 분		중간지급 등				최종			정산										
	⑬	근무처명																		
	⑭	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									
	⑮	퇴직급여	8,600,000				10,000,000			18,600,000										
	⑯	비과세 퇴직급여																		
	⑰	과세대상 퇴직급여(⑮-⑯)	8,600,000				10,000,000			18,600,000										
근속 연수	구 분		⑱	입사일	⑲	기산일	⑳	퇴사일	㉑	지급일	㉒	근속월수	㉓	제외월수	㉔	가산월수	㉕	중복월수	㉖	근속연수
	중간지급 근속연수			2011-01-01		2011-01-01		2017-04-30		2017-05-04		76		0		0				7
	최종 근속연수			2011-01-01		2011-01-01		2017-04-30		2017-05-06		76		0		0				7
	정산 근속연수																			
	안분	2012.12.31.이전																		
		2013.1.1.이후																		

퇴직소득 세액계산	④④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				2017			
	④⑤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(③③×퇴직연도별 퇴직소득세액(③③×④⑥ 퇴직연도별 월수)				421,517			
	④⑥ 기납부(또는 기과세이연) 세액							
	④⑦ 신고대상세액(④⑤-④⑥)				421,517			

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	④⑧ 신고대상세액(④⑦)	연금계좌 입금명세					⑤① 퇴직급여(①⑦)	(51) 이연 퇴직소득세 (④⑧×④⑨/⑤①)
		연금계좌취급자	사업자등록번호	계좌번호	입금일	④⑨ 계좌입금금액		
		근로복지공단				8,600,000		
		합 계						
							18,600,000	194,894

□ 중간정산 기준일과 지급일이 다른 경우

○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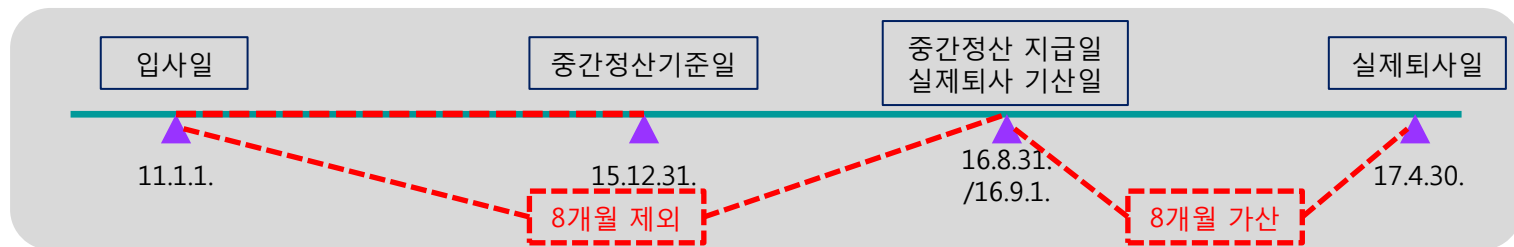
구 분		⑱ 입사일	⑲ 기산일	⑳ 퇴사일	㉑ 지급일	㉒근속월수	㉓제외월수	㉔가산월수	㉕중복월수	㉖근속연수
근속 연수	중간지급 근속연수									
	최종 근속연수	2011-01-01	2011-01-01	2016-08-31	2016-08-31	68	8	0		5
	정산 근속연수									
	안 분	2012.12.31.이전								
		2013.1.1.이후								

⑳ 퇴사일 : 퇴직한 날[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보는 경우(중간정산 지급일) 포함]을 입력

사례) 중간정산 기준일(15.12.31.)과 지급일(16.8.31.)이 다른 경우 퇴사일은 지급일(16.8.31.)을 입력하고 제외월수에 8개월을 입력, 추후 실제 퇴사시(17.4.30.) 기산일은 중간정산 지급일의 다음날(16.9.1.)을 입력하고 당초 제외월수인 8개월을 가산월수로 입력

□ 중간정산 기준일과 지급일이 다른 경우

○ 실제 퇴직금 지급시



구 분		⑱ 입사일	⑲ 기산일	⑳ 퇴사일	㉑ 지급일	㉒ 근속월수	㉓ 제외월수	㉔ 가산월수	㉕ 중복월수	㉖ 근속연수
근속 연수	중간지급 근속연수	2011-01-01	2011-01-01	2016-08-31	2016-08-31	68	8	0		5
	최종 근속연수	2011-01-01	2016-09-01	2017-04-30	2017-05-06	8	0	8		2
	정산 근속연수	2011-01-01	2011-01-01	2017-04-30		76	8	8		7
안 분	2012. 12. 31. 이전									
	2013. 1. 1. 이후									

세액정산을 할 경우 입력

※ 중간정산 지급일과 실제퇴사일이 동일한 연도이면 반드시 세액정산(합산신고)을 해야 하며 동일한 연도가 아니라면 세액정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.

사례) 중간정산 지급일(16.8.31.)이 실제 퇴사일(17.4.30.)과 동일한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세액정산을 할 필요는 없다.
세액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중간지급 근속연수에 입력하지 아니한다.